

초빙교수임용등에관한규정

2019.06.27.제정 2019.08.22.일부개정

<교무팀>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조제5항의 초빙교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초빙교수”라 함은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육·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① 초빙교수는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.

② 초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
2.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교육 및 연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환산율은 「교원인사규정」 제18조제1항의 <별표 1>에 의한다.

제4조(결격사유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.

제2장 임 용

제5조(정년) 초빙교수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. 다만, 정년에 도달한 초빙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.

제6조(임용일)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3항 또는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7조(임용기간) ①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.

② 삭제 (2019.8.22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과건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 또는 직위해제·퇴직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초빙교수가 필

요한 경우

2.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

3.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)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지원사업의 재원(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등)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**해당 사업기간으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19.8.22.)**

⑤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재임용 통지가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

제8조(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) ① 부서에는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는 부서장이 임명하는 2인 이상의 관련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9조(신규채용)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.

② 공개채용은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부 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.

③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임용) ① 임용기간, 강의시간, 임금, 면직사유, 복무 등의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하여 임용한다.

② 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
제3장 복무 및 처우

제11조(강의시간 등) ① 초빙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.

② 담당 강의시간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다.

③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시간을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며, 비교과 및 계절학기 강의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⑤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제외한 특강, 연구업무 및 기타 지정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다.

제12조(복무 및 처우) ① 「사립학교법」, 정관 및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의 적용은 관련 법령에 따르고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여부 및 퇴직급여 지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계약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)까지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금) ① 임금은 담당 업무(강의, 연구업무, 기타 지정업무 등)를 준비·시행하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.

② 계절학기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로 정한다.

③ 기타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임용보고) 초빙교수를 임용한 경우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퇴직 및 면직

제15조(당연퇴직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.

제16조(면직사유 등) ①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직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말일에 면직할 수 있다.

1. 소속 학과(부)가 폐지된 때

2. 담당 교과목이 폐지된 때

3. 제7조제3항에 따라 초빙교수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

4. 임용기간 중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때

5. 기타 계약서에 정한 사유에 해당된 때

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1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하는 초빙교수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초빙교수임용규정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초빙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보수, 임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초빙교수임용규정」과 계약내용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